

체크인평등

「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」으로 보는
‘여성폭력 2차 피해’ 바로 알기

1

무심코 한 말과 행동,
누군가에겐 '두 번째' 폭력입니다

‘여성폭력 2차 피해’ 개념 바로 알기

'여성폭력 2차 피해'란?

- ☑️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- ☑️ 사건 발생 후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피해
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)
- ☑️ 사용자(사업주 또는 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등)로부터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, 평가 또는 근무조건 등의 차별 등

*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



조직 내에서 겪는 대표적인 2차 피해 유형



“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
감봉 처리됐고, 항의하자 해고당했습니다.”

- **신분상 불이익** : 파면, 해임, 해고 등
- **부당한 인사** : 징계, 정직, 감봉, 승진 제한, 전근, 직무 미부여 등

“업무 복귀 후 조직 내 왕따가 시작됐습니다.
동료들의 다면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아
결국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.”



- **차별** :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받거나 그에 따른 임금, 상여금 차별 등
- **정신적·신체적 손상** : 집단 따돌림, 폭행이나 폭언 등
- **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** : 인허가 취소, 용역계약 해지 등

'2차 피해자'의 범위는?

여성폭력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
신고자와 조력자도 포함됩니다.

* 여성폭력이란?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
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



**'여성폭력 2차 피해' 예방을 위한 노력,
피해자 보호는 물론 법적 의무를 다하는
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의 시작입니다.**

「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」 자세히 보기

